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 권고(19-진정-0890900 사건) 및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 등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추행’의 독자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추행’의 징계양정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 1의3]에 ‘추행’의 기본 양정기준이 ‘강제추행’과 같이 ‘강등’이던 것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설정함.

나. ‘2차 피해 유발행위’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3)

-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도 그 비위행위에 들어맞는 징계건명이 없었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2) ‘2차 피해 유발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위 정도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을 신

설함.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징계 위주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처벌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함.
- 2)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 양정인 ‘정직’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양정인 ‘감봉’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하여 비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는 탄력적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합리화함.
- 3) 아울러 병 징계양정기준 중 성희롱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추행, 성폭력 목인·방조행위 및 2차 피해 유발

별표 1의3 제1호가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별표 1의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추행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폭력 목인·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2차 피해 유발		파면-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별표 1의3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추행”이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 성폭력,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포함)

다. 성폭력, 성희롱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 2)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진급 또는 승진 제한 그 밖에 인사조치
-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전보, 전근, 보직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
- 4) 근무평정,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나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강등 ~ 근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나. 성희롱	강등 ~ 감봉		휴가단축 ~ 견책	
	다.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근기교육	근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별표 2 비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

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p> <p style="text-align: center;">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비행의 정도 및 과실</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행의 유형</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의3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 음주 운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의4와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파면-해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등-정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봉</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신-견책</td> </tr> </table>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 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p> <p style="text-align: center;">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비행의 정도 및 과실</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td> <td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행의 유형</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의3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 음주 운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의4와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파면-해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등-정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봉</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신-견책</td> </tr> </table>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 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 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 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p>[별표 1의3]</p> <p style="text-align: center;">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p> <p>1. 일반기준</p> <p>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가. 가중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p>[별표 1의3]</p> <p style="text-align: center;">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p> <p>1. 일반기준</p> <p>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가. 가중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미수에 그친 경우
-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 용촬영 등 그 밖의 성 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폭력 목인· 방조자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6)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미수에 그친 경우
-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 용촬영 등 그 밖의 성 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추행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폭력 목인· 방조자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2차 피해 유발		파면-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비고

1.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추행”이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 성폭력,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포함)
 - 다. 성폭력, 성희롱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

- 이익
- 2)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진급 또는 승진 제한 그 밖에 인사조치
-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전보, 전근, 보직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
- 4) 근무평정,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급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나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 성실의 무위반	가. 직무태만 나. 그 밖의 비행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 감봉	감봉 ~ 근신	근신 ~ 견책	
3.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4. 공정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6. 청렴 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7.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강등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8.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성폭력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나. 그 밖의 비행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 성실의 무위반	가. 직무태만 나. 그 밖의 비행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 감봉	감봉 ~ 근신	근신 ~ 견책	
3.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4. 공정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6. 청렴 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7.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강등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8.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강등 ~ 감봉		휴가단축 ~ 견책		
	나. 그 밖의 비행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 비 고

1. 제8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제8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비 고

1. 제8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8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별표 1의3] 비고 제4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